■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5.12.30.>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3조 관련)

가. 시설장	1명
나. 사무국장	1명
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촉탁의사	1명 이상
라. 간호사	입소자 4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바. 영양사	1명 이상을 두되,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사무원	2명 이상(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아. 전문요원	1명 이상을 두되,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 전문요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자. 작업지도원	1명 이상을 두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차. 조리원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두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카. 위생원	입소자 100명당 1명
타. 관리인 또는 경비원	1명 이상
파.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 비고

1.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2. 정신요양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가 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겸할 수 있다.